

# 도시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

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“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” 및 “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(시행일자 2007. 12. 01)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도시가스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

### □ 시공감리 행정처리지침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2-3조 (시공기록의 징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일 감리 또는 최종감리 후 징구서류 표준화</li> <li>• 최종감리 후 3일 경과시까지 서류 미제출시 제출 촉구 공문 발송</li> </ul>	별표1 별지 제4호
제2-4조 (시공자 등 의무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시공감리 징구서류 중 건설업등록증 사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“주기적 신고사항”을 표기한 것을 징구하여 시공자의 적정 여부 확인 강화</li> </ul>	
제3-1조 (시공감리의 신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사계획 승인(신고) 비대상(기술검토 비대상)인 사업자배관의 시공감리 신청시 감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징구토록 함</li> </ul>	
제3-3조 (시공관리자 배치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예정 금액별 시공관리자 배치기준 명시</li> <li>• 1인의 시공관리자가 2개 현장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법령조건 명시</li> </ul>	별표2
제3-4조 (비파괴시험 입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KGS 인정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외주품질등록증을 발급받은 비파괴시험업체가 시험을 하는 경우 비파괴시험공정에 대한 검사원의 입회(비표삽입) 면제</li> </ul>	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3-5조 (필름 재판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KGS 인정용접사가 용접을 하고 외주품질등록증을 발급받은 비파괴시험업체가 시험 및 필름 판독을 하는 경우 필름 재판독 면제</li> <li>• 재판독 면제 업체의 필름에대한 불시 재판독 제도 도입 및 재판독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명시</li> </ul>	별지 제1호
제3-6조 (시공 도중 변경사항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감리 진행 중 공사계획 변경승인(신고)대상 발생시 처리방법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생 후 7일 내 변경승인(신고) → 최종감리 전까지 일괄 변경승인(신고)</li> </ul> </li> <li>• 공사계획 승인(신고) 비대상으로 시공감리 신청된 시설의 시공감리 진행 중 배관 길이 증가로 공사계획 승인(신고)대상이 될 경우 사후 공사계획승인(신고) 없이 최종감리로 종결처리</li> </ul>	별지 제5호
제3-7조 (시공감리 대상 전환시설 검사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감리 비대상으로 판단, 공사진행 중 시공감리 대상으로 전환되는 시설의 처리방법 명시</li> <li>• 시공감리 및 공사계획 승인(신고) 대상이 될 경우에도 사후 공사 계획승인(신고) 없이 최종감리로 종결처리</li> </ul>	
제3-8조 (기부체납 시설 검사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부체납된 도로에 설치된 가스배관의 공급시설전환시 처리방법 명시</li> <li>• 기부체납 예정 도로에 신규 배관 설치시 처리 방법 명시</li> </ul>	
제3-10조 (도외자의 시설 구분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외자시설에 대하여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정함</li> </ul>	
제3-12조(감리결과 표시 및 완공도면 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일 감리결과 도면 표기 방법 개선</li> <li>• 시공관리자의 1일 시공도면 작성에 대한 확인 강화</li> </ul>	
제3-15조 (연료전환시설의 시공감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PG집단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경우의 시공감리 처리방법 명시</li> <li>• LPG시설로 검사를 받지 않은 기존시설의 경우 신규 시설 기준으로 처리</li> </ul>	
제3-16조 (혼합시설의 시공감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 단지 내 지역정압기 설치 시 전·후단 배관의 구분을 명확히 함</li> <li>• 압력조정기가 설치된 사용자공급관의 시공감리 처리방법 명시</li> </ul>	
제3-18조(현장발급조건) (3-17조, 3-1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감리필증 현장발급 조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인의 요청이 없어도 감리 당일 가스가 통입되는 시설은 현장필증 발급 후 통입</li> </ul> </li> </ul>	
제3-19조 (현장발급 절차 및 사후관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휴일감리로 인해 필증발급일과 실제 감리일이 상이할 경우 날짜를 수기로 정정하여 교부</li> </ul>	
제3-21조 (분할감리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사계획 승인(신고) 1건 공사에 대해 시공감리 분할 처리 가능한 조건 명시</li> </ul>	

## 가스시공 소식 ①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3-22조 (주상복합 건물의 감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독사용자용정압기가 설치된 주상복합건물 내 공급시설(공동주택) 및 사용시설 혼재시 당해 토지 내 배관에서 공동주택 공급 가능조건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독사용자용정압기 전단에서 공동주택 배관분기 및 전용의 압력조정기 설치</li> </ul> </li> <li>• 사용자 부지 내에 설치된 기숙사 등 숙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단독정압기 후단에서 숙소로의 분기(공급) 허용</li> </ul>	
제3-25조(사업자배관과 사용자배관의 연결공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배관(인입관)과 사용자배관(사용자공급관, 내관) 동시 시공시의 검사처리방법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합 기밀시험 및 안전조치사항 등</li> </ul> </li> </ul>	
제3-27조 [정압기(지) 1일감리항목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압기(지) 1일감리 항목을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압기실의 기초·벽 부분 및 캐비닛과 기초의 고정 공정 등</li> </ul> </li> </ul>	
제3-28조 (시공감리 수수료 초과분 징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야간, 휴일 등 시공감리분에 대한 초과수수료는 감리필증 발급 전 징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현장필증 발급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징수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
제3-30조 (시설기준 외의 부적합 사항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자 및 용착사의 자격 등 시설기준 외의 부적합 사항 발견시 처리방법 명시</li> </ul>	
제3-32조(보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령 개정으로 이 지침이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법령 우선 적용</li> <li>•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음</li> </ul>	

### □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2-2조(징구서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검토 징구서류 표준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용자공급관 관경 계산서 징구 폐지 등</li> </ul> </li> </ul>	별표1
제2-3조 (기술검토 결과 통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검토 후 결과 통지방법을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합, 서류보완 요구, 부적합 처리 조건 명시</li> </ul> </li> </ul>	별지 제14호
제2-4조 (서류보완 절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검토 서류 보완시 보완서류 및 보완대상 서류의 편철 방법 명시</li> </ul>	별지 제14호
제2-6조 (현장기술검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 기술검토는 동일한 시공자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.</li> </ul>	
제2-7조(기술검토 관할지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조소 신규 설치공사를 제외한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외자의 가스공급시설 기술검토 부서를 지역본부(지사)로 변경</li> </ul>	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2-8조 (변경공사의 범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사계획 변경승인(신고)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</li> <li>- 배관의 “경로변경” 및 “당해 공사구간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</li> </ul>	
제3-2조(배관의 재질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용자공급관 중 노출배관의 재질검사 방법을 명확히 함</li> <li>- “거래명세표 확인 + 3개소 샘플링 검사” 또는 “전수검사” 중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시</li> <li>• 재질확인은 지하매설배관의 1일시공감리와 병행 실시</li> </ul>	
제3-3조(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시공감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시공감리는 1일시공감리 (또는 최종감리)와 병행 실시</li> </ul>	
제3-6조 (라인마크 확인방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라인마크 미설치 건에 대한 시공감리 처리 방법 개선</li> <li>- 사업자배관 : 미설치 사유서 징구 → 정기검사시 확인</li> <li>- 사용자공급관 : 미설치 사유서 징구 → 설치완료 공문 징구 → 정기검사 시 확인</li> </ul>	별지 제15호 별지 제16호
제3-7조 (되메움재 허용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천연사 외의 인조사, 양질의 흙, 슬랙, 폐주물사 등 사용기준 명시</li> </ul>	
제3-8조 (되메움재 부설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래 포설두께, 모래주머니 사용, 모래주머니 간격 등을 명시</li> </ul>	
제3-9조(건축물 내부 배관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내부배관의 설치기준 중 환기가 잘되는 장소, 자연통풍구조 방법, 비파괴시험 방법,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방법 등을 명시</li> </ul>	
제3-10조 (중층 등 배관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층 내 배관 설치시에는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, 환기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및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면 가능</li> </ul>	
제3-13조 (배관의 지하구조물 통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관을 타 시설물 상부에 설치(상월)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</li> </ul>	
제3-14조 (입상관 밸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동주택 입상관 밸브높이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시공감리 처리시 약약서 징구 후 최종감리 처리</li> <li>• 정기검사 시 입상관 밸브 높이 미달 발견 시 부적합 처리 및 시공사 (건설사)에 시정 요구공문 발송</li> </ul>	별지 제17호
제3-15조 (배관의 용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출 저압배관의 용접접합 대상을 50A 이상 배관으로 명확히 함.</li> </ul>	
제3-17조 (PE배관의 용착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PE관의 버트용착 기준 명시(배관 제조사 제시조건)</li> <li>• 신 KS규격 PE관의 접합이 가능한 용착기 종류 명시</li> </ul>	

# 가스시공 소식 ①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3-18조 (사전용착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감리 신청 후의 PE관 사전용착 가능조건을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일 공사분 이내의 물량의 사전용착 허용</li> <li>- 사전용착시 용착사 확인을 위한 “사전용착 확인서” 징구</li> </ul> </li> </ul>	별지 제26호
제3-19조(EF 용착 부 냉각시간 표시 예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용착성적서에 냉각시간 미출력시에도 인정 가능한 용착조건 명시</li> <li>• 냉각시간 미출력된 포인트는 “냉각시간 자연상태유지”로 성적서에 표기</li> </ul>	
제3-20조 (신축흡수 조치 적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내부 배관은 신축흡수조치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
제3-21조 (사용자 토지 내 가스차단장치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 토지 내에 설치하는 밸브 및 밸브 전단의 배관은 가스공급시설로 시공감리 및 정기검사 처리</li> </ul>	별지 제17호
제3-23조 (승압방지장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층건물(높이 60m 이상)의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명시</li> </ul>	별표 6
제3-27조 (기준배관 연결부분 기밀시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관과 신설관 연결부의 기밀시험 방법을 명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T 분기점 및 직관 연결부 : 누출검사(우리공사)</li> <li>* 누출검사 후 현장에서 필증 발급</li> <li>- 서비스 T 분기점 : 누출검사(도시가스사)</li> <li>* 필증 발급 후 도시가스사에서 천공 및 누출검사</li> </ul> </li> </ul>	
제3-28조 (통합 기밀시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압기와 전·후단 배관,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과 인입관의 통합 기밀시험 조건 명시</li> </ul>	
제3-29조 (본·공급관 적용범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압기(지)에 연결된 본·공급관 및 정압기 부속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</li> <li>• 세트 정압기에 포함하여 미리 제작된 본·공급관의 비파괴시험 인정</li> </ul>	
제3-30조 (정압기지 등 검사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압기지 내 설비 및 배관별 시설기준 적용 항목을 명확히 함</li> </ul>	
제3-32조 (철거시설 등 안전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관 설치가 없는 배관 철거 후 캡 마감 및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밸브의 단순 교체는 시공감리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
제4-2조 (시공기록 의 제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공정검사 또는 완성검사 후 징구서류 표준화</li> <li>• 완성검사 후 3일 경과시까지 서류 미제출시 제출 촉구공문 발송</li> </ul>	별표7 별지 제20호
제4-3조 (시공사 등 의무사항) 제4-4조 (시공관리자 배치 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감리 행정처리 지침 준용</li> </ul>	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4-5조 (비파괴시험 입회) 제4-6조(필름 재판독)		
제4-7조(저장소 및 가스 사용시설 구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NG저장소와 사용시설이 같이 있을 경우의 시설 구분 및 검사 처리방법 명시</li> </ul>	
제4-8조 (공정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출배관은 공정검사 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• 천장 속 설치배관 및 공간이 있는 건축물 내 배관은 100% 공정검사 실시</li> </ul>	
제4-10조 (일부시설 완성검사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사용시설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 중 일부 시설 완성검사 및 잔여구간의 기술검토 및 검사 처리방법을 명시</li> </ul>	
제4-12조 (혼합시설에 대한 검사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상복합건물 내의 시설 중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구분 및 검사범위를 명확히 함</li> </ul>	
제4-13조 (연료전환시설의 검사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LPG사용시설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연료 전환시의 완성검사 처리방법 명시</li> <li>• 기존 사용하던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명시</li> </ul>	별표 8
제4-14조(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완성검사대상이 되는 변경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</li> </ul>	
제4-15조 (검사필증 현장발급 대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시 필증의 현장발급대상을 명확히 함</li> </ul>	
제4-19조(GHP설치 시설 완성검사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GHP설치 시설의 완성검사 처리방법 명시 (기존 업무지시 사항)</li> </ul>	별표9
제4-20조(대형버너 설치 시설 완성검사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대형버너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처리방법 명시</li> </ul>	
제4-21조 (폐지 후 재사용 및 철거 시설에 대한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가스사용시설 폐지 후 재사용하려고 할 경우와 사용시설 철거 후 마감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처리방법 명시</li> </ul>	
제4-26조(공정검사 표시 및 완공도면 확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정검사 결과 도면 표기방법 개선</li> <li>• 시공관리자의 1일 시공도면 작성에 대한 확인 강화</li> </ul>	
제4-27조(완성검사 수수료 초과분 징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야간, 휴일 등 완성(공정)검사분에 대한 초과수수료는 필증 발급 전 징수 - 다만, 현장필증 발급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징수 가능</li> </ul>	

## 가스시공 소식 ①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4-28조(시설기준 외의 부적합 사항 처리) 처리방법 명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 부적정, 용착사 자격 부적정 등 시설기준 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</li> </ul>	
제4-29조(배관의 재질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노출배관의 재질검사 방법을 명확히 함 - “거래명세표 확인 + 1개소 이상 육안검사(공정검사 또는 최종완성검사시)</li> </ul>	
제4-32조 (관이음쇠 및 용접부 피복) 제4-33조 (되메움재료 허용기준) 제4-34조 (되메움재부설기준) 제4-35조 (보호관 및 보호판 설치) 제4-36조 (배관의 지하구조물 통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준용</li> </ul>	
제4-37조 (환기불량 장소 배관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천장 속 및 공간이 있는 건축물 내부배관 설치기준 명시 - 100% 공정검사 실시, 지상배관 설치기준 적용</li> <li>• 건축물 내 벽·바닥 매몰설치 : 30% 공정검사 실시</li> </ul>	
제4-38조 (중층 등 배관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상복합 건물 등의 중층에 배관 설치시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준용</li> </ul>	
제4-39조 (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F식 가스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“단열조치가 된 굴뚝”으로 인정</li> <li>• 배터리선 등 약전류 전선도 “전선”으로 봄</li> </ul>	
제4-40조(배관의 접합) 제4-43조(기밀시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0A 이상 강관은 용접으로 접합, 40A 이하 노출배관은 나사접합 가능</li> <li>• 사용시설 완성검사시 호스 포함 기밀시험 실시</li> </ul>	
제4-44조 (업무용대형연소기) 제4-45조(승압방지장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무용 대형연소기 식별 기준을 명시</li> <li>• 건물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경우의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명시</li> </ul>	별표10 별표6
제4-46조(단독사용 사용정압기 설치위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외부에 단독사용사용정압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의 시공 및 검사기준 명시</li> </ul>	
제5-3조(셋트 정압기 비파괴시험 인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장에서 제작하는 셋트 정압기의 경우 제작과정에서의 비파괴시험 인정</li> </ul>	

관련 조항	주요 내용	비고
제5-4조 (매물형 정압기 설치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물형 정압기 설치기준 명시</li> </ul>	별표11
제5-5조 (정압기 이전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정압기의 이전 설치 시 처리방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압력조정기 및 필터 재사용 인정</li> <li>- 배관 용접부 비파괴시험은 재시험 실시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기존 성적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	
제6-1조 (정기검사 권역) ~ 제6-3조(정기검사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스도매사업자 공급시설의 지역본부(지사)별 정기검사 권역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본부(지사)별 정기검사 권역을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본부(지사)별로 정함</li> <li>- 당해 시설 소재 지역본부(지사)별로 정기검사 신청을 받아 정기검사 실시</li> <li>- 정기검사 일정은 지역본부에서 소속 지사분을 포함, 일정수립 후 가스공사에 통보</li> </ul> </li> </ul>	별표 12
제6-7조 [배관의 기밀시험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배관 정기검사시 피복손상탐지장치 등을 이용한 기밀시험 처리방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약부분 등 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의 대체 기밀시험 실시과정에 검사원 입회</li> </ul> </li> </ul>	
제6-8조 [방식전위 측정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배관에 대한 정기검사시 방식전위 측정방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배관(섹터별 배관의 합) 중 T/B 20개소 이상 또는 전체 배관에 설치된 T/B 설치 수의 20% 이상 중 많은 수에 대하여 측정 (가스도매사업자 배관 준용)</li> </ul> </li> </ul>	
제6-9조 (정기검사 청구서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스공급시설 정기검사 시 청구서류 표준화</li> </ul>	별표 13
제6-12조 (변경공사 발견시 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시 임의변경 시설 발견시 처리방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개월 이내의 시정기한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	
제6-13조(공동사용 단독정압기 검사처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개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독정압기에 대한 정기검사 처리방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검주체 및 부적합 사항 시정 주체 명확화</li> </ul> </li> </ul>	
제6-15조 (정기검사 현장필증 발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필증 현장발급(교부) 절차 명시</li> <li>• 법령 개정으로 이 지침이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법령 우선 적용</li> </ul>	별표 14
제7-1조 (지침 적용 예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음</li> </ul>	